【 2016.05.17(화) 강원일보 】

올 도내 공사물량 1조5,000억 규모 급감

중소건설업체 입찰참가 기회마저 줄어 경영난 우려

도내 중소건설업체가 수주물량 감소 등으로 경영난이 우려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발주되는 공공기관 공사물량은 지난해보다 6,146억원이나 줄어든 3조4,249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2조5,627억원에 달했던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도 올해는 1조6,192억원에 불과해 지난해보다 9,435억원 줄어들었다. 1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가 3,166건 5,891억원으로 전체의 86.1%나 차지해 수주 경쟁에 따른 일부 업체 적자시공도 우려되고 있다.최근에는 일부 발주기관이 지역업체를 배려하지 않고 입찰을 진행하면서 건설업체의 반발이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올해들어 건설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평가방식이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는 불리해지면서 입찰 참가 기회도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돌파구마저 보이지 않아 건설업계와 정부·지자체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 2016.05.17(화) 강원도민일보 】

"공사요? 수익이 나야 하지요"

철근·골재 등 건설자재값 상승세

중소·영세 건설업체 경영난 가중

건설 자재값이 상승하면서 강원건설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16일 도내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와 주요 철강사는 최근 2분기 철근 기준가격을 t당 58만5000원으로 합의했다. 1분기 기준가격(52만5000원)에 비해 6만원(약 11%) 인상된 셈이다.

건설업계는 철근 값을 3만5000원 내리자고 요구했지만, 결국 철강업계가 주장한 대로 가격이 책정됐다.

골재 가격도 인상됐다.

2013년 2만2000원이던 골재 가격은 올해 2만3000원으로 인상됐으며 수급 불균형으로 추가 인상이 검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1㎥당 골재의 정상 가격은 1만2000~1만3000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골재 가격 인상으로 레미콘 가격도 올랐다.

레미콘 가격은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춘천의 경우 1㎥당 7만3180원, 평창은 동계올림픽 영향 등으로 8만120원이다.

도내 레미콘 가격 역시 골재·자갈 가격 인상으로 지난해에 비해 1500원 상승했다.

건설 자재 값의 상승은 지자체별로 모래와 자갈 등 채취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돼 있지만 수요는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철근의 경우 주요 재료인 철스크랩(고철) 가격이 오른데다 중국산 철근 제품 가격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건설 자재값 상승은 도내 업체를 비롯한 중소·영세 업체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업체들은 동계올림픽 관련 공사를 포함, 도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 중 적정 공사비를 충당시키지 못해 참여를 꺼리고 있다.

도내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 자재값 인상 등으로 수익이 나지않는 건설 공사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금 회전 때문에 울며겨자 먹기로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공사참여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도내 건설수주액 두달 연속↓

3월 2629억원 수주·전년보다 43% 감소

올 초 증가세로 출발했던 강원도내 건설수주액이 두 달째 하락했다.

16일 한국은행 강원본부와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3월 강원지역 건설수주액은 2629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43% 감소했다.

지난 2월 수주액(1306억원)이 전년보다 34.4% 줄어든데 이어 두 달째 수주액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보다는 민간부문의 수주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

3월 공공부분 수주액은 전년 동월보다 184.5% 증가한 1287억원이다.

하지만 민간부문은 67.7% 떨어진 1341억원에 그쳤으며 건축 분야 수주액은 59.8% 하락했다. 도내 건설 수주액 감소는 주거용 건축을 중심으로 투자 규모가 감소하는 등 주택경기 위축이 주요 원인이란 분석이다.

한편 도내 건설업계는 올 1월 전년 동기보다 77.2% 증가한 2160억원을 수주, 상승세로 출발했다. 안은복

【 2016.05.17(화) 건설경제 】

발주-원도급자 구두지시도 '정식계약' 인정

건산법 개정안 입법예고

계약추정 제도 적용 확대
건설사 주기적신고제 폐지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만
年1회 실태조사 정례화

성년 됐어요 성년의 날인 16일 서울 중구 필동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열린 '성년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이 머리에 족두리를 쓰고 전통성년례를 재현하고 있다. 안윤수기자 ays77@

앞으로 발주자와 원도급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계약서 없는 구두 지시'라도 서면통지 등을 통해 정식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건설업체에 대한 주기적 신고 제도는 폐지되며,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만을 대상으로 연 1회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2월4일 개정·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의 위임사항과 함께 일부 규제 개선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계약추정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이는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서 구두로만 지시받은 공사 내용이나 계약금액을 내용증명우편 등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했을 때 발주자가 이를 인정하거나 15일 안에 부인하지 않으면 서면 내용대로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계약추정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이미 도입돼 있다. 건산법 시행령은 하도급법이 규정한 원-하도급자 외에 발주자와 원도급자 간에도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원도급자(원사업자)의 범위를 평균매출액 1000억원 이상 대기업으로 제한한 하도급법과 달리 모든 원-하도급자 간에 계약추정을 인정한다. 2014년 기준 종합건설사 1만1243개 가운데 평균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225개(2%)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또 전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장비·기술인력 등을 제대로 갖췄는지 3년마다 확인하는 주기적 신고제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도 담고 있다. 개정 건산법은 주기적 신고제를 없애는 대신 1년마다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선 연 1회 실태조사 대상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 자료를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로 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했던 주기적 신고제가 폐지되면서 대다수 건실한 건설업체들의 재정·행정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도급·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시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대장과 하도급계약을 통보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건설공사대장만 통보하도록 일원화했다.

이 밖에 육아휴직자도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인력에 포함하고 인정기능사 신청 요건을 실무경력 5년에서 실무경력 3년으로 낮췄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4일부터 시행된다. 김태형기자 kth@

하도급법 위반, 부당이득 많을수록 과징금 더 물린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금액이 많을수록 과징금을 더 물게 된다. 또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하거나 보복조치를 할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금액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와 정액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하도급대금의 2배에 일정 부과율을 곱해 산정했다.

법 위반행위를 통해 취득한 불법적 이익이 과징금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불법적 이익이 많더라도 하도급대금이 적으면 과징금이 적게 산정되고 반대로 불법적 이익이 적더라도 하도급대금이 많으면 과징금이 많아지는 등 과징금 부과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과징금 기본금액 산정 방식을 하도급대금의 2배에 법위반금액 비율을 곱하고 부과율을 다시 곱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때 과징금 부과율은 먼저 법 위반행위 유형과 법 위반행위 피해 유발 정도 등을 요소로 위반행위별로 1점부터 3점까지 점수를 산정하도록 했다. 이어 산정된 점수에 따라 '중대성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하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2.2점 이상)는 부과율을 60% 이상 8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1.4점 이상 2.2점 미만)는 40% 이상 6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1.4점 미만)의 경우 20% 이상 40% 미만의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개정안 행정예고
기술유용·보복조치땐
과징금 최대 5억원 부과

특히 위반행위 유형 요소의 경우 기술유용, 부당 감액·대금 결정·수령 거부, 보복조치, 탈법행위 등에 대해 3점을 부여하고 피해 유발 정도는 피해 수급자 비율이 전체의 70% 이상인 경우와, 수급사업자의 현저한 경영악화가 초래된 경우에 대해 3점을 주도록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과징금 기본금액이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보다 적으면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금액으로 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최근 3년간 평균 법 위반금액 비율이 15%인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 기본금액이 종전에 비해 7분의1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지만 과징금 부과율이 기존 3~10%에 비해 20~80%로 확대됨에 따라 과징금 기본금액은 종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큰 행위에 대해선 법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하더라도 충분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액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는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2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을 부과하되 기술 유용, 보복조치 등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해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는 최대 50%였던 가중·감경 폭을 20% 이내로 제한해 가중·감경이 엄격히 이뤄지도록 하고 가중 사유와 감경 사유를 과거 3년간 법 위반 횟수가 3회 이상, 피해 발생 수급사업자의 수가 50개 이상, 조사 거부·방해, 보복조치 등과 자진시정으로 각각 규정했다.

이 외에도 과징금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복수의 유형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위반행위 유형별로 과징금을 각각 산정해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7월25일부터 개정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은 법 위반금액에 비례해 제재의 합리성이 높아지고 불법적 이익은 빈틈없이 환수된다"며 "특히 기술 유용, 보복조치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액수가 늘어나 이들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건설근로자 처우 개선 법안
결국 19대 국회문턱 못넘어

건설기능인 등급제, 임금지급보증제 등 건설근로자의 전반적인 처우개선안을 담은 법안이 결국 19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관련 법안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개정안'과 '건설기능인 양성법'인데, 정부가 발표한 '3차 건설근로자 기본계획'에서 약속한 정책 상당수가 포함된 법안이라 정부와 국회의 불협화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앞서 처리 가능한 '비 쟁점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건고법'에는 최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건설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담겨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3차 건설근로자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건설기능인 등급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임금지급 보증제' 등의 방안을 현실화하려면 '건고법' 처리가 필수다.

'건기법'에도 건설기능 훈련에 대한 내용이 규정돼 있어 '건설기능인 등급제'와 관련한 부분이 중복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양 법안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충돌했었다.

그러나 지난 겨울 '기능인 등급제'를 국토부가 도맡아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법안이 19대 국회 내에서 현실화 할 것이라는 기대도 컸다.

그러나 16일 법안심사소위를 끝으로 사실상 19대 국회 내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는 물론, 정부부처들도 합의한 사안이 국회의 무능으로 무산돼버렸다"면서 "결국,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들 처우개선이 현실화하려면 다음 국회에서 진행될 지난한 법안 논의 과정을 다시 겪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기자 ysys@

아하! 그렇구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과 행정소송

Q A회사는 B공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제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소송이 인용될 수 있는지요?

A B공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거나 B공사의 대표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B공사를 상대로 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각하될 것입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권력을 발동하여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4822 판결 등).

따라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 의한 '기타 공공기관'에 불과하여 같은 법 제39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B공사의 대표자가 별도의 준용규정에 근거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B공사는 행정소송법에 정한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거나 그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10. 11. 26.자 2010무137 결정 등).

이러한 경우 B공사가 한 제재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지 A회사를 B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B공사가 A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A회사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A회사가 B공사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위 소송은 각하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기관의 법적 성격을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은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이번주 개찰예정 물량 어떤 게 있나

동해항 3단계 북방파제·부여 하수도 건설사업관리 눈길

48억원 규모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동해항 3단계 북방파제(2공구) 축조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둘러싼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간 치열한 수주전이 본격화됐다.

42억원 규모의 부여군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및 분류식 하수관로정비사업 통합 건설사업관리 용역도 최종 낙찰자 선정을 위한 물밑 경쟁이 시작됐다.

이들 사업은 이번주에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게 될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울산광역시는 18억원 규모의 '2025년 울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 및 지형도면작성용역'에 대한 개찰을 17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도화+성지, 동명+한신, 경호+부광, 유신+대흥 등 컨소시엄이 경쟁하고 있다.

18일에는 48억원 규모의 동해항 3단계 북방파제(2공구) 축조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개찰이 예정, 대형 엔지니어링 업계 간 수싸움을 진행하고 있다.

기술자 평가를 진행하는 SOQ 방식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는 △세광+건일+혜인 △천일+서영+대영 △한항+도화+건화 등의 컨소시엄이 경쟁하고 있다.

11억8000만원 규모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진부IC~호명교 간) 확포장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개찰도 예정됐다.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는 일신+유신+서경, 도화+제이엠+이레, 한종+동남+건일, 극동+용마+승이, 신명+태백+성운, 홍익+삼경+서광, 천일+수성+현산, 경원+삼주, 동명+정+한일, 경동+효성+JH, 서영+화신+하나, 수성+미래+동서, 건화+진화+정민 등 12개 컨소시엄이 경쟁하고 있다.

이어 19일에는 부여군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및 분류식 하수관로정비사업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개찰이 예정됐다.

현재 △건양+경동 △건화+다우+계림 △동명+천마+KSM △경호+강호 △도화+송현 △홍익+드림 △제일+웨텍+기산 △선진+KCI △삼안+보람 △한종+세일 등 10여개 컨소시엄이 입찰과제 수행계획과 방법 등을 연구 중이다.

20일에는 14억8500만원 규모의 부산항 신항 웅동(2단계) 준설토투기장 복토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개찰이 예정됐다.

건일, 대영, 서영, 세광, 세일, 일진, 한맥, 한항, 항도, 혜인 등의 엔지니어링 업계가 수주경쟁을 펼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23억원 규모의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 궤도부설 기타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과 3억여원의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외 1개 사업 에너지 사용 계획 용역 등을 둘러싼 업계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한형용기자